

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1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17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7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0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의 범위,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 계약에 포함.(안 제4조제2항)
- 나.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 및 심의제의 대상(안 제6조제2항, 제3항)
- 다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(안 제22조)
- 라.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함.(안 제27조제2항)
- 마.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청문규정 신설(안 제27조의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현실에 부합하게끔 통일되게 정비하라는 지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 조례 표준안이 2001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음.
- 따라서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